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수탁 계약서

본 계약의 _____(이하 “갑”)와 (주)대한전기학원 영등포점(이하 “을”)은 “갑”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은 아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아래의 사업장에 소속된 아래의 근로자(이하 “위탁훈련생”이라고 한다)에 대한 훈련을 “을”에게 위탁한다.

훈련과정	회사		
훈련기간	월 일 ~ 월 일 (총 일, 시간)		
결석가능일	일	훈련기관	(주)대한전기학원 영등포점
1인당 훈련비	총 원 (정부지원금 원, 자기부담금 원)		
사업장명(회사명)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장 주소			
전자우편(계산서용)	@		
연락처	전화	팩스	
위탁훈련생 1		주민등록번호	-
위탁훈련생 2		주민등록번호	-
위탁훈련생 3		주민등록번호	-

제2조(훈련비 지급) “갑”은 자기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훈련비 총액을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훈련개시일 전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갑”은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로 훈련비를 “을”이 지정한 계좌(KB국민은행 384701-04-218403 (주)대한전기학원영등포점)에 입금하며, 이 경우 “을”은 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하며, 이 경우 “을”은 결제카드의 앞뒷면 사본을 보관하고 카드매출전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료) ① “을”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에 의한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등, 훈련수료기준을 통과한 위탁훈련생에 대해 수료 처리를 하고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훈련생이 훈련수료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갑”은 훈련비 지원 및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성실의 의무)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하여 훈련의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내용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훈련생이 훈련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재해 등으로 위탁훈련생에게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갑”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을”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이 취소되는 등,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종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잔여 대금에 대한 지불 의무에서 면제되며, “을”은 “갑”이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훈련종단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서의 기재사항 오기 또는 위탁훈련생의 고용상태 변경 등으로 인하여 훈련 실시 신고내용 등이 비용 신청 시점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갑”은 훈련비 지원 및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제5조(정보 제공 동의) ① “갑”이 본 계약서에 기재한 사업장 및 위탁훈련생의 정보는 “을”의 훈련 운영 과정에 사용되며, “을”은 제공받은 정보를 계산서 발행, 실시신고 및 비용신청 등을 위하여 국세청, 고용노동부 및 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② “을”은 위 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갑”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을”은 “갑”이 제공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갑”이 제공한 정보는 법정보존기간까지 보관한다.

제6조(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서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거나 해석 및 적용상 이견 등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 및 관할기관의 명령에 따른다.

②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본 계약서는 해당 법령의 내용을 좇아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③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을
사업체명 :	훈련기관명 : (주)대한전기학원 영등포점
소재지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8 4층
전화번호 :	전화번호 : 02-3474-8844
대표자 : (직인)	대표자 : (직인)